논 문 투 고 규 정

이 규정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게재 논문이 일관된 방식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투고용 원고 작성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86. 11. 제 정
1987. 3. 1차 개정
1995. 11. 2차 개정
2005. 1. 3차 개정
2006. 12. 4차 개정
2013. 9. 5차 개정
2015. 6. 6차 개정
2015. 12. 7차 개정
2016. 4. 8차 개정
2019. 2. 9차 개정
2019. 12. 10차 개정

1. 본 학회지는 식품위생 및 안전성 등에 관련된 분야의 학문 및 기술 등에 관한 연구논문(research article), 연구노트(research note), 총설(review)을 게재하며, 교신저자는 반드시 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제출을 승인하는 경우나 외국인과 초청논문은 예외로 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주 연구 분야는 (1) 식품 내 위해인자 (미생물, 화학적, 물리적)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 (2) 식품위해인자에 대한 검출 및 제어기술, (3) 식품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방안과 기술, (4) 식품 안전성 및 위해평가, (5) 미생물, 발효 및 생물공학 기술, (6) 식품의 생리활성, 및 (7) 기타 식품안전과 관련된 것이다.
3. 게재된 논문의 모든 저작권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에 속하며 논문투고시 저자점검표와 저작권이양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학회지 논문게재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Abstract는 영문으로, 본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Figure와 Table은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5.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 한글' 또는 MS Word 를 이용하고, 글씨 크기는 10-12 포인트 크기로 A4용지 (상하좌우에 2cm 여백)에 양쪽정렬로 작성하되 쪽마다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원고는 학회 홈페이지 http://www.foodhygiene.or.kr (KOR) 또는 http://www.foodsafety.or.kr (ENG)의 논문투고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투고한다. 원고 투고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황화빌딩 1110호, 전화번호 : 02-566-0417, 팩스 : 02-566-4417, 이메일 : foodhygiene@paran.com) 로 문의한다.
6. 인체실험(관능평가 포함)과 동물실험 연구를 포함하는 논문은 공인된 기관 즉 생명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에서 생명윤리 및 동물실험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번호는 재료 및 방법에 표기하여야 한다.
7 모든 논문의 학술용어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용어이며 국제적으로 지정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논문은 연구논문(research article), 연구노트(research note), 총설(review)의 3종류이며 원고의 종류는 저자가 원고 첫 장에 명시해야 한다.
   (1) 연구논문(research article)은 독창적인 새 지견을 제시한 논문으로 길이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논문작성형식은 표지, Abstract 및 Key words,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Acknowledgement(해당 논문에 한함), 국문요약, References의 순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으로 투고시에도 국문요약을 작성하여야 하고, 자세한 설명은 9항에 한다. 단, Introduction은 제목을 표기하지 않으며 Results와 Discussion은 각각 또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논문 작성 시 상기 체제의 모든 제목은 국문요약 제목만 한글로 하고 반드시 영문으로 한다.
   (2) 연구노트(research note)는 연구논문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며 단편적인 연구에 대한 결과로 원칙적으로 인쇄되었을 때 2페이지 이내이어야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별도로 하며 체제는 연구논문에 준한다.
   (3) 총설(Review)은 국내외 연구논문을 종합적으로 전망한 논설이며 편집위원회가 저자를 위촉할 수 있다.
9. 논문의 작성 원고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논문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일부 변경할 수 있다.
   (1) 제 1쪽 표지 작성형식은 국문과 영문으로 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 소제목(running title), 교신저자 관련 정보를 작성한다. 영문 제목 작성 시에는 단어의 첫머리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① 저자명을 국문으로 표기할 때는 저자명 중간에 "·"을 삽입하고(예: 홍길동·안중근·김홍도),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을 넣어 표기하며, and는 작성하지 않는다.(예: Kil-Dong Hong, Jungkun An, Hong Do Kim).
   ② 소속기관명은 부서명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영문 표기 시 full name을 기울임체로 표기하고 부서명, 소속기관명, 도시(군)명, 국명을 표기한다.
   - 저자들의 소속이 다른 경우 저자 이름 끝에 1, 2(위첨자) 등 아라비아 숫자를 순서에 따라 붙이고, 해당 저자의 소속 앞에 역시 같은 위첨자를 붙인다. 그리고 공동주저자 (공동 제1저자, 공동교신저자)를 추가해서 지정할 수 있다.
   - 공동 1저자의 경우 이름 오른쪽에 '‡'를 위첨자로 표시한다. 교신저자의 경우 이름 오른쪽에 '*'를 위첨자로 표시한다. 공동교신저자의 경우에도 이름 오른쪽에 '*'를 위첨자로 표시한다. 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하단에 '‡' 혹은 '*' 표시와 함께 영문으로 "Co-corresponding Athor to"로 표시한다.
   ③ 소제목(Running title)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5-6 단어로 논문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신저자 관련 정보는 교신저자명, 소속 및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 이메일 순으로 작성하며, 공동교신저자

의 경우도 순서에 맞추어 작성한다. 주소는 소속기관과 도시(군)명 우편번호, 국명(Korea)을 표기한다.

(2) 영문초록(Abstract)과 국문요약은 자체만으로 논문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이 포함되어야 하며 Abstract는 300단어 이내의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3) Key words는 Abstract의 하단에 논문의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 5개 이내의 단어로 표기하며, 각 키워드의 첫 글자는 대문자여야 한다.

(4) 서론에는 연구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저자가 어떤 문제와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재료 및 방법에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독자가 확인실험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① 재료는 구체적 규격, 수량, 출처를 분명히 표시하고,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영문으로 "물질명[제조사, 제조지역(한국 및 다른 국가의 경우 도시, 미국의 경우 도시, 주명), 국가명]"과 같이 명시한다.

② 실험용 기기, 장치, 소프트웨어 등은 괄호 안에 영문으로 "기기명[모델(버전)명, 제조사, 제조지역(한국 및 다른 국가의 경우 도시, 미국의 경우 도시, 주명), 국가명]"과 같이 명시한다.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최초에만 위의 형식대로 표시하고 다음부터는 모델과 제조사명만 기술한다.

③ 물질과 기기명 등은 약어나 고유명사가 아니면 첫 글자를 소문자로 표기한다. 물질명의 약어는 IUPAC-IUB 규정에 따라 괄호 안에 그 정의를 명시하여야 한다. (예: glucose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진공포장기(IS-100, Zeropack, Seoul, Korea), HPLC (Waters 600, Waters Co., Ltd., Miliford, MA, USA))

④ 잘 알려진 실험 방법이나 분석방법은 기존의 문헌을 인용하면서 간단히 기술하고, 방법의 변형 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모든 표(table) 제목과 그림(figure)은 'Excel'이나 'Power point'로 1단폭(8 cm) 또는 2단폭(16 cm)의 크기로 작성하고 설명문은 영문으로 하되("Table 1. --", "Fig. 1. --."로 표기), 본문을 참조하지 않고 단독으로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기재한다. 표 제목 끝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그림 설명문 끝에는 마침표를 찍으며, 두 경우 모두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쓴다. 모든 사진(photograph)은 해상도 300 dpi 이상의 jpg 파일로 제출되어야 한다.

(7) 표나 그림의 데이터는 mean±SD(또는 SE)로 표현하고 표나 그림 아래에 설명을 추가한다. 통계처리의 유의수준은 기울임체와 대문자 P(P<0.05)로 표현하며 통계분석결과의 유의수준 표시는 *, **, *** 등으로, 다중 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으로 나타낸다.

(8) 각주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기호, 단어 또는 문장 끝에 $^{1)}$, $^{2)}$, $^{3)}$ 등의 위첨자 표시를 붙이고 table 하단에 역시 같은 표시를 붙인 후 보통체로 설명한다. 각주의 설명은 마침표로 끝낸다.

(9) 그림의 부호에 대한 설명은 그림 아래 설명문에 추가하고, 축 눈금(tic)은 안쪽으로 표시한다.

(10) 원고에서 학명, 또는 기타 필요한 고유명사 및 국문의 영어식 표현은 기울임체로 표시하고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시한다. 생물명은 abstract와 재료 및 방법에 학명을 언급하되 최초는 full name으로 이후는 속명을 약자로 표기한다. 품종명은 학명 다음에 cv. 품종명으로 표기하되 첫 글자는 대문자, 보통체로 표기하고 한글 발음표기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한글표현에서 괄호를 사용할 경우 내용과 괄호 사이는 붙여쓰기, 영문표현(abstract, table 제목, fig. 설명문 및 reference)에서의 괄호는 모든 경우에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12) 숫자, 단위, 범위, 수식 및 약어 등의 표기는 아래 사항과 첨부 원칙표에 따른다.

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단위는 CGS 혹은 SI 단위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예: mL, L, μL, μg 등). 단위는 숫자와 한 칸 띄운다. 단, 10°C, 10%, 10시간 등은 붙여 쓴다.

② 숫자 등의 범위를 표기할 경우 하이픈 (-)을 사용한다 (예: 10-20°C, 5-10일 등).

③ 약어는 최초 언급 시 full name을 쓰고 괄호 안에 표기한 후 사용한다.
[예: modified atmosphere (MA)]

(13) References 작성형식은 아래와 같다.

① 본문 중 문헌 지시는 위첨자로 표시하며, References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② 문헌 인용은 본문 중 적절한 위치에 해당 문헌 제1저자의 영문 성(last name)과 위첨자를 표기한다.
예: (한글논문)
1인 저자: Kim에 따르면.../...라고 보고하였다 (Kim$^{1)}$ 에).
2인 이상 저자: Kim 등에 따르면.../...라고 보고하였다 (Kim 등$^{1)}$에).
(영문논문)
2인 이상 저자: Kim and Lee reported.../...(Kim and Lee$^{1)}$).
3인 이상 저자: Kim et al. reported.../...(Kim et al.$^{1)}$).

③ 참고문헌(References)은 본문에 나오는 순서로 문헌을 배열한다.

④ 정기간행물은 저자명, 제목, 발행지명, 권수, 면수(첫페이지-끝페이지), 발행년도의 차례로 기술하고 정기간행물(잡지)의 약호는 영문인 경우는 ISI Journal Title Abbreviation Index (http://www.efm.leeds.ac.uk/~mark/ISIabbr/J_abrvjt.html)에 따르고, 동양어 논문인 경우는 저자명, 제목, 잡지명을 국가가 지정한 표기법에 따라 영문으로 표기한다.

⑤ 단행본은 저자명, 발행년도, 소제목, 발행지(도시, 국가), 직접적인 관련 면(첫페이지-끝페이지), 순서로 기술한다.

⑥ Internet은 등록자, 검색일(년, 월, 일), 제목, 검색경로 순서로 기술한다.

⑦ 학위논문은 저자명, 제목, 학위(석사 또는 박사), 학위수여 기관, 기관의 장소, 발행년도 순서로 기술한다.

⑧ References 작성 예.

[정기간행물]

1. Lee, S.M., Lim, J.M., Kim, K.H., Cho, S.Y., Park, K.S., Sin, Y.M., Cheung, C.Y., Cho, J.I., You, H.J., Kim, K.H., Cho, D.H., Microbiological study using monitoring of microorganism in salt-fermented fishery products. *J. Food Hyg. Saf.*, **23**, 198-205 (2008).

[단행본]

1. Strunk, J.W., White, E.B., 1979. The Elements of Style, third ed. Macmillan, New York. pp. 22-70.
2. Kramer, J.M., Gilbert, R.J., 1989. Bacillus cereus. In: Doyle, M.P (Ed), Foodborne Bacterial Pathogens. Marcel Dekker, New York, pp. 22-70.

[Internet]

1. Norton, R., (2006, November 4). How to train a cat to operate a light switch [Video file]. Retrieved from http://www.youtube.com/watch?v=Vja83KLQXZs

[학위논문]

1. Baik, M., Effect of water and water migration on starch retrogradation and thermomechanical properties of bread during staling. PhD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MA, USA (2001).

10. 저자는 초교에 대해 교정을 하고 재교 이후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11. 논문 내용에 관한 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잡지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정오표를 제출할 수 있다.
12.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에 게재하기 위해 채택된 원고의 저자에게 페이지 당 60,000 원의 논문 게재료가 부과된다. 저자가 별쇄를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 부수를 초교완료 시까지 신청하고 인쇄료와 함께 50 부당 50,000 원을 지불해야 한다. 단, 교신저자가 빠른 심사결과를 원할 경우, 속심제도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속심 심사는 10일 이내에 1차 심사(논문수정채택 가부결정)를 완료해야 한다. 속심심사를 원하는 교신저자는 속심료(편당 200,000원)를 별도로 선지불 해야하며, 최종 논문 심사결과가 거절(rejection)되어도 환불하지 아니한다.
13. 전문가 심사과정 (Peer Review)
    (1) 편집위원장의 역할은 학문 분야에 따라 편집자를 지정하고 전체적인 동료 검토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2) 투고논문은 본 학회의 학문 분야에 적합한지를 편집간사가 1차 확인한다. 만약 본 학회의 학문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3) 심사위원은 편집간사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되 투고논문은 2인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14. 논문의 심사결과가 수정후 승인이나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reject 처리된다.
15. 연간 학회지 구독비용은 정회원 50,000원, 학생회원 10,000원, 도서관 회원 120,000원이며, 초기 가입 시에는 가입비 20,000원이 추가된다. 학회지는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서만 우편으로 발송한다.
    회원 구독문의 및 주소변경에 관한 모든 서신은 아래 주소로 보내야 한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황화빌딩 1110호,
    전화번호: 02-566-0417, 팩스: 02-566-4417,
    이메일: foodhygiene@paran.com,
    웹사이트: www.foodhygiene.or.kr (국문) 또는
    www.foodsafety.or.kr (영문)
16. 학회지에 실린 모든 논문은 웹사이트 www.foodhygiene.or.kr (국문), www.foodsafety.or.kr (영문)에서 보관한다.
17.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18.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008. 1. 제정) (2019. 12.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은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가. 저자됨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시 저자이며, 한 가지라도 불만족시 기여자임.
- 연구의 개념 및 설계, 자료 확보, 분석, 평가에 대한 중대한 기여. 그리고
- 논문의 초고 작성 혹은 중대한 내용의 수정. 그리고
- 최종고 출판에의 동의. 그리고
- 연구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동의.

⑤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⑥ 기타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4조(부정행위물의 처리) 본 학회는 제3조에 규정한 부정행위에 의한 결과물(논문)임을 확인되었을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결과물(논문)을 삭제하고 향후 5년간 논문투고금지,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하며 이 조치를 대상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학회지에 공시할 수 있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 학회 (또는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말한다.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6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① 본 학회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학술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 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회 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본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③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3장 부정행위 제보 및 권리보호

제11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예비조사

제15조(위원회 구성)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부정행위의 시점이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부정행위가 제보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3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제17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5장 본조사

제18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간의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④ 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2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4) 조사결과
5) 기타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제6장 판정 및 조치

제22조(판정)
①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논문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학회장에게 건의하며 이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의)
①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조치) 학회장은 부정행위 관련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최종 판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기록의 보관 및 비밀유지

제25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학회 사무국에 5년간 보관한다.

제26조(비밀유지) 연구윤리 및 진실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